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98
----------	------

제출연월일 : 2021. 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개정이유

현행 조례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 제정·시행됨에 따라 미반영된 법령 위임사항과 자치법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상위 법령에 맞춰 전부 개정하여 상위 법령과의 일치를 통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대해 규정하는 근거 법령 명시(안 제1조)

1) 근거 법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법령 내용을 참조하여 조례 내용 일부 수정·보완(안 제2조~제3조)

1) ‘물산업 육성’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으로 내용 수정

2)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한 노력 추가

다. 계획의 명칭 및 내용 변경(안 제4조)

1) (前)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 (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2) 시행계획의 내용 중 연구·개발 및 실증화에 관한 사항 추가

라. 물산업전략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1)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자문기구인 ‘물산업전략위원회’의 기능에 국제 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물산업지원센터 운영 등 추가

마. 물산업전략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 1) 기존 50명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축소
- 2)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명시

바.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 신설(안 제9조~제10조)

- 1) (기능)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정책지원 및 개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기업 역량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 2) (운영) 전문기관 등에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사. 조문 변경 및 내용 보완(안 제11조~제13조, 제15조)

- 1) 종전의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로, 종전 제13조를 안 제15조로 변경
- 2) 기업 지원내용에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화 시설 및 테스트베드 제공과 물관련 제품의 인증·검증 내용 추가
- 3)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내용 보완

아. 준용 규정 신설(안 제14조)

- 1) 재정 지원 및 사무 위탁을 위한 절차, 방법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준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등(붙임)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0. 11. 20. ~ 12. 10.(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심사대상 아님
-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 5) 감질영향심사: 개선의견 없음
- 6)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우수제품이나 기술의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방향 및 목표
2. 지역 물산업의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물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4.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화에 관한 사항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이하 “물산업 클러스터”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물산업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물산업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5. 물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물분야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물산업 분야, 산업비즈니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학 및 물관련 연구소의 교수 또는 연구원
3. 물산업 관련 기관·단체·언론사 및 기업체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산업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8조(물산업 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 개발 및 상용화,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물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 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 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 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등 비즈니스 지원
- 6. 물산업 클러스터 관리 지원
- 7. 박람회, 전문가 포럼, 축제 등 물 관련 행사
-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위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업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물산업 육성을 위해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기업 등 지역 물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
3. 물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화 시설 및 테스트베드 제공
4. 물관련 제품의 인증·검증
5. 물기업 창업 및 해외진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해외시장 진출 등 지원) ① 시장은 물산업의 국제교류 활성화와 지역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해외시장 관련정보 제공
3. 물관련 국제행사 지원
4.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업 등 유치) ① 시장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물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투자가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외 기업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대구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준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계약, 관리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관 계 법 령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관리기술“이란 수량·수질 및 수생태계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말한다.
2.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과 관련된 기술사업
 - 나.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
 - 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물관련영업
 - 라. 「수도법」 제3조제33호에 따른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련된 사업
 - 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사업
 -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를 처리 또는 이용하는 사업
 - 사.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 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이용 등과 관련된 사업
 - 자.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 차.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 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이용·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
 - 타.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설계, 건설, 운영, 부품·소재·장치·기기·약품의 시험·검사·인증, 제조·판매·유통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물기업“이란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물산업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중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란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 지원 시설 등을 일정한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 및 집적단지를 말한다.
6.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실증화“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하거나 개발된 기술을 실증설비 적용 등을 통하여 규모 확정, 최적화 또는 주변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① 정부는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의 기본방향과 목표
2.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의 국내외 환경 분석
3.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
4. 물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5. 물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활성화
6.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7.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
8.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6.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
7. 그 밖에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개발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과 관련된 사업,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하천수의 관리와 관련된 사업
3.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업
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문조사와 관련된 기술사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과 관련된 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수자원관리기술과 관련된 사업
5. 법 제2조제2호 각 목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21조(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물산업지원센터(이하 “물산업지원센터“라 한다)에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물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시행계획의 명칭, 물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등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혁신성장국 물에너지산업과장 이승화